

# 예 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55,344,810	25,660,344
일반회계	768,395,390	23,051,862
특별회계	86,949,420	2,608,483
공기업특별회계	69,436,536	2,083,09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196,145	755,88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989,408	1,109,68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250,983	217,529
기타특별회계	17,512,884	525,387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8,220	847
강릉시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142,000	34,260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533,570	76,007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3,916,612	117,498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83,132	62,494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803,000	84,090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5,006,350	150,191

제 2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8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2018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8,219,9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8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9,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것으로 한다.